

2020 - 508

-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68-1번지 일대 신이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42호(2020.1.30.)로 고시한 2025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)에 적합한 범위에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6조에 따라 2020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0.8.19.)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0년 12월 3일
서울특별시

I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
1. 정비사업의 명칭 : 신이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2. 정비구역 지정 조서

			(㎡)			
		168-1	-	24,592.3	24,592.3	-

17 1 84 1 가 가 ()

3. 토지이용계획

		(㎡)	(%)	
		24,592.3	100.0	-
		2,964.0	12.2	-
		2,076.1	8.4	-
		187.9	1.0	-
		700.0	2.8	-
		21,628.3	87.8	-
		21,628.3	87.8	-

4.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		(㎡)			(%)	
		24,592.3	-	24,592.3	100.0	-
	2 (7)	16,167.0	) 13,203.0	2,964.0	12.2	
		8,425.3	) 13,203.0	21,628.3	87.8	

■ 용도지역 변경사유서

				(㎡)		
-	168-1	2 (7)		13,203.0	435%	,

5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가.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					(m)						
				(m)							
	2	1	8		247	170	237-116		-	-	-
	3	1	4		10	160-40	237-31		-	-	-
	3	8	2-6		171	220-26	167-1		-	2002-211 (02.06.12)	-
	3	8	2-6		104	220-26	220-282				
	3	-	6		19	167-6	167-18		-	2003-9 (03.02.20)	-

■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-	2-1	· · : 8m · : 247m	·
-	3-1	· · : 4m · : 10m	·
3-8	3-8	·	·
3-	-	·	·

나. 주차장 결정(변경) 조서

				(㎡)				
			170-42	627.0	) 627.0	-	2002-89 (2002.10.18)	-

■ 주차장 결정(변경) 사유서

		·	·

다. 공공공지 결정(변경) 조서

				(㎡)				
			220-282	108.0	) 108.0	-	2002-211 (2002.06.12)	-
			237-31	-	) 126.8	126.8	-	-
			357-3	-	) 61.1	61.1	-	-

■ 공공공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		.	.
		.	.
		- : 126.8㎡	.
		.	.
		- : 61.1㎡	.

라. 사회복지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					(㎡)				
	.			170-43	-	) 700.0	700.0	-	

가

■ 사회복지시설 결정 사유서

.		.	.
.		- : 700.0㎡	.
.		- : 280.9㎡	.
.		- : 1	.

마. 청소년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					(㎡)				
	.			170-43	-	) 700.0	700.0	-	

가

■ 청소년시설 결정 사유서

.		.	.
.		- : 700.0㎡	.
.		- : 838.5㎡	.
.		- : 2 ~ 3	.

바. 도서관 결정(변경) 조서

					(㎡)				
	.			170-43	-	) 700.0	700.0	-	

가

■ 도서관 결정 사유서

		. - : 700.0m ² - : 271.8m ² - : 4	

5.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

			(m ³)			
		168-1	-	) 300.0	300.0	: 3,150.0m ³
			-	) 250.0	250.0	
			-	) 500.0	500.0	
			-	) 1,200.0	1,200.0	
			-	) 600.0	600.0	
			-	) 200.0	200.0	
			-	) 100.00	100.00	

「 」 가 , “ ”

6. 기존 건축물의 정비·개량 계획

	가			()					
	(m ³)	(m ³)							
	24,592.3	21,628.3	168-1	233	-	-	233	-	-

7. 건축시설계획

■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

	가				(%)	(%)	(m)/	
	(m ³)	(m ³)						
	24,592.3	21,628.3	168-1		60	219.5 435.0 435.0	93m 31 /	-

		990 (564 , 326 , 100) (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<table><tr><td colspan="2">()</td><td></td><td>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</td><td>990 (100.0%)</td><td>564 (100.0%)</td><td>326 (100.0%)</td><td>100 (100.0%)</td></tr><tr><td rowspan="3"></td><td>60㎡</td><td>763 (77.1%)</td><td>337 (59.6%)</td><td>326 (100.0%)</td><td>100 (100.0%)</td></tr><tr><td>60㎡~85㎡</td><td>227 (22.9%)</td><td>227 (40.4%)</td><td>-</td><td>-</td></tr><tr><td>85㎡</td><td>-</td><td>-</td><td>-</td><td>-</td></tr><tr><td colspan="6">(54)</td></tr></table>					()								990 (100.0%)	564 (100.0%)	326 (100.0%)	100 (100.0%)		60㎡	763 (77.1%)	337 (59.6%)	326 (100.0%)	100 (100.0%)	60㎡~85㎡	227 (22.9%)	227 (40.4%)	-	-	85㎡	-	-	-	-	(54)																				
(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990 (100.0%)	564 (100.0%)	326 (100.0%)	100 (100.0%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60㎡	763 (77.1%)	337 (59.6%)	326 (100.0%)	100 (100.0%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60㎡~85㎡	227 (22.9%)	227 (40.4%)	-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85㎡	-	-	-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54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가 (50/100) 21 57가 () 219.5%, 435.0% <table><tr><td colspan="2"></td><td colspan="4">()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</td><td colspan="4">50/100 (107.75%)</td></tr><tr><td rowspan="4">(4)</td><td>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<tr><td></td><td colspan="4">2,450.00㎡</td></tr><tr><td></td><td colspan="4">2</td></tr><tr><td>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<tr><td rowspan="3">(1)</td><td></td><td colspan="4">1%() , 3%()</td></tr><tr><td>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<tr><td>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</table>							()						50/100 (107.75%)				(4)							2,450.00㎡					2									(1)		1%() , 3%()													
		(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50/100 (107.75%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4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2,450.00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1)		1%() , 3%(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3~8m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(), 2-1 (,), 3~8m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(4m) 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■ 용적률 계획

	()				(,)			
	24,592.3㎡	21,628.3㎡	3,612.6㎡	2,264.0㎡	700.0㎡	648.6㎡	244.6㎡	-
()	■ (,) - = 3,612.6㎡ (16.7%)							
	■ : 219.5% ■ : 435.0%()							
							()	
							• 50/100 (107.75%) : 23,304.49㎡(107.75%) < :23,368.77㎡(107.8%)	
							• 「 3 5 8	
							• (300 3%) , (:2,444.08㎡ < :2,450.00㎡)	
							2 86 ,	
							1%() , 3%()	
	■ : 435%							
	■ 219.5%, 435.0%, 107.75% = $\frac{219.5}{435} \times (1 + 1.3 \times 7) + \frac{107.75}{435} \times 0.7 \times \alpha$ = $[435.0 \times (1 + 1.3 \times 0.4598 \times 0.1272 + 0.7 \times 0.0300)] = 477.1\%$ 435% (:434.97%)							
α []	■ = $\frac{(2,964\text{㎡} - 244.6\text{㎡})}{(24,592.3\text{㎡} - 2,964.0\text{㎡} - 244.6\text{㎡})} = 0.1272$							
α []	■ = $\frac{(648.6\text{㎡})}{(24,592.3\text{㎡} - 2,964.0\text{㎡})} = 0.0300$ ()							
가	■ $\div$ = $200.0\% \div 435.0\% = 0.4598$							

■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

-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.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의무 공공임대주택은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% 이상 건설
- 「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의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은 용적률의 50/100 이상 건설
- 공공임대주택은 서울시에 매각(처분)

						(%)
	990	100.0	426	100	326	100.0
40㎡	81	8.2	38	38	-	8.9
40㎡ ~50㎡	420	42.4	240	43	197	56.3
50㎡ ~60㎡	262	26.5	148	19	129	34.8
60㎡ ~85㎡	227	22.9	-	-	-	

가.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(재개발 의무 임대)

		: 664 [990 - 326 (가)] : 100 (990 - 326) 15% : 664 × 15% 99.6 , 100		
40㎡		100	15.1	100.0
	39.95㎡	38	5.7	38.0
	44.77㎡	43	6.5	43.0
	59.98㎡	19	2.9	19.0

나.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(역세권 완화 임대)

		219.5%			
		435.0%			
	가	435.0% - 219.5% = 215.5%			
	가 50%	219.5% × 0.5 = 107.75% 21,628.3㎡ × 107.75% = 23,304.49㎡			
		23,304.49㎡			
()					• • : 5,445.70㎡ • • : 5,4

8. 환경보전,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
가.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

	• () • • • •	-
	• 가 • •	-
	• 가	-

나. 환경성 검토결과

	1.	30%	0	• 100% • 30.05%	•
	2.		0	•	
	3.	20%	0	•	•
		30%	0	•	•
	4.	3	0	• 가 5 • 가	• 가 5
	5.	2	0	•	•

	6.		o	.	()	.
	7.		o	.	가 86	.
			o	.	, 2	.
	8.	Skyline	o	.		.
			o	.		.
	9.	가	o	.	가	가
	10.		o	.		()
			x	.		-
		15 /100unit	x	.		-
가	11.		o	.	가	.
	12.		o	.		.
	13. ()		o	.		.

9. 정비사업 시행계획

				가			
	74 가 ()	가 4		512	990	478	-

10.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

	23 . . . (. .) . . . - 가 ()	200m

11.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

		• 1m , 2m	-
		•	-
		• , 15	-
		• 70	-
		•	-
		•	-

II.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
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

			(㎡)	(%)	
		168-1	24,592.3	100.0	-

2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

가.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		(㎡)			(%)	
		24,592.3	-	24,592.3	100.0	-
	2 (7)	16,167.0	) 13,203.0	2,964.0	12.2	
		8,425.3	) 13,203.0	21,628.3	87.8	

나. 기반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1)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					(m)						
				(m)							
		2	1	8	247	170	237 - 116		-	-	-
		3	1	4	10	160 - 40	237 - 31		-	-	-
		3	8	2~6	171	220 - 26	167 - 1		-	2002 - 211 (02.06.12)	-
		3	8	2~6	104	220 - 26	220 - 282				
		3	-	6	19	167 - 6	167 - 18		-	2003 - 9 (03.02.20)	-

■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-	2-1	. - : 8m - : 247m	.
-	3-1	. - : 4m - : 10m	.
3-8	3-8	.	.
3-	-	.	.

2) 주차장 결정(변경) 조서

				(㎡)				
			170 - 42	627.0	)627.0	-	2002 - 89 (2002.10.18)	-

■ 주차장 결정(변경) 사유서

		.	.

3) 공공공지 결정(변경) 조서

				(㎡)				
			220 - 282	108.0	) 108.0	-	2002 - 211 (2002.06.12)	-
			237 - 31	-	) 126.8	126.8	-	-
			357 - 3	-	) 61.1	61.1	-	-

■ 공공공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		.	.
		.	.
		- : 126.8㎡	.
		- : 61.1㎡	.

4) 사회복지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					(㎡)				
	.			170 - 43	-	) 700.0	700.0	-	

가

■ 사회복지시설 결정 사유서

-		. - : 700.0m ² - : 280.9m ² - : 1	.

5) 청소년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					(m ²)				
	-			170-43	-	) 700.0	700.0	-	

가

■ 청소년시설 결정 사유서

-		. - : 700.0m ² - : 838.5m ² - : 2 ~ 3	가

6) 도서관 결정(변경) 조서

					(m ²)				
	-			170-43	-	) 700.0	700.0	-	

가

■ 도서관 결정 사유서

-		. - : 700.0m ² - : 271.8m ² - : 4	.

3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

가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	가	(㎡)			(%)	
			) 21,628.3	21,628.3	87.9	

나. 건축물의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

1)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		가		
			. 1 . 2 () . 3 1 . 4 2 (, ,)	

2) 건축물의 개발밀도(건폐율, 용적률, 높이)

가) 건폐율 계획

		60%	-

나) 건폐율 계획

	219.5%	435.0%	435.0%	-

■ 용적률 완화 사항

다) 높이 계획

		93m	-

다.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

		3~8m

라.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

1)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

		· (), 2-1 (,), : 3~8m
		· 2 (4m)

2)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

		(20m)

3) 환경관리계획

	1.	30%	0	· 100% · 30.05%	· ,
	2.		0	·	
	3.	20%	0	· .	· . · .
		30%	0	·	·
	4.	3	0	· 가 5 · 가	· 가 5
	5.	2	0	·	·

	6.		o	()	.
	7.		o	가 86	.
			o	, 2	.
	8.	Skyline	o	.	.
			o	.	.
	9.	가	o	가	가
	10.		o	.	()
			x	.	.
		15 /100unit	x	.	.
가	11.		o	가	.
	12.		o	.	.
	13.	()	o	.	.

4)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

-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.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재개발의무 공공임대주택은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% 이상 건설
- 「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의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은 용적률의 50/100 이상 건설
- 공공임대주택은 서울시에 매각(처분)

						(%)
	990	100.0	426	100	326	100.0
40㎡	81	8.2	38	38	-	8.9
40㎡ ~50㎡	420	42.4	240	43	197	56.3
50㎡ ~60㎡	262	26.5	148	19	129	34.8
60㎡ ~85㎡	227	22.9	-	-	-	

III. 신이문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사항

1. 결정(변경)취지

- 신이문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따라 재개발정비구역에 해당하는 신이문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 제척 및 계획내용 폐지

2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

			(㎡)				
		217-8	39,678.0	) 8,425.3	31,252.7	2020-211 (02.06.15)	-

■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유서

	220-227	· - 39,678.0㎡ → 31,252.7㎡ (: 8,425.3㎡)	·

3.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

가.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		(㎡)			(%)	
			()			
		39,678	) 8,425.3	31,252.7	100.0	-
2	(7)	39,678	) 8,425.3	31,252.7	100.0	
		8,286	-	8,286	26.5	
	2	165	-	165	0.5	
	3	35	-	35	0.2	
		31,192	) 8,425.3	22,766.7	72.8	

■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

			()
	220-227	· - 31,192.0㎡ → 22,766.7㎡ (: 8,425.3㎡)	·

4.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

가. 교통시설

1)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			(m)		(m)						
	3	40	25~30		11,600 (145)	5	1-47		-	1962.12.8 (177)	-
	1	63	20		2,250 (220)	255-2	247-1		-	1966.6.21 (2493)	-
	3	8	2~6		171 (150)	220-26	167-1		-	2002.6.12 (211)	-
	3	8	2~6		104	220-26	220-282		-	-	-

) ()

■ 도로 변경(결정) 사유서

3-8	3-8	.	.

2) 주차장 결정조서(변경없음)

3) 철도 결정조서(변경없음)

나. 공간시설

1) 공공공지 결정(변경) 조서

				(㎡)				
			220-282	108	) 108	-		

■ 공공공지 변경(결정) 사유서

		.	.

5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

가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1) 최대개발규모(변경없음)

2) 가구 및 획지계획(변경)

■ 계획기준

	가	

■ 기정

	가	(㎡)		(㎡)	(㎡)	
	S1	1,772.2	238 - 5	56	72	
			237 - 144	16		
-	S2	2,200.6	-	-	-	
	S3	784.5	220 - 111	74	279	
			220 - 112	94		
			220 - 365	20		
			220 - 113	91		
	S4	800.5	220 - 105	94	184	
			220 - 106	94		
-	S5	1,060.8	-	-	-	

) 가 cad

	가	(㎡)		(㎡)	(㎡)	
			217 - 1	132	350	
			217 - 13	155		
			219 - 13	63		
	S6	4,598.5	219 - 10	69	148	
			219 - 11	79		
			220 - 325	79	89	
			220 - 354	10		
			220 - 326	86	93	
			220 - 356	7		
-	S7	249.6	-	-	-	
-	S8	304.6	-	-	-	
-	S9	395.8	-	-	-	
-	S10	459.8	-	-	-	
-	S11	1,946.2	-	-	-	
-	S12	277.2	-	-	-	
	S13	331.6	220 - 13	53	66	
			220 - 27	10		
			220 - 318	3		
-	S14	1,709.6	-	-	-	
-	S15	168.6	-	-	-	

) 가 cad

■ 변경

	가	(㎡)			
				(㎡)	(㎡)
	S1	1,772.2	238 - 5	56	72
			237 - 144	16	
-	S2	2,200.6	-	-	-
	S3	784.5	220 - 111	74	279
			220 - 112	94	
			220 - 365	20	
			220 - 113	91	
	S4	800.5	220 - 105	94	184
			220 - 106	94	
-	S5	1,060.8	-	-	-
	S6	4,598.5	217 - 1	132	350
			217 - 13	155	
			219 - 13	63	
			219 - 10	69	148
219 - 11			79		
			220 - 325	79	89
			220 - 354	10	
			220 - 326	86	93
			220 - 356	7	

) 가 cad

	가	(㎡)				
				(㎡)	(㎡)	
	S7	249.6	-	-	-	가
	S8	304.6	-	-	-	
	S9	395.8	-	-	-	
	S10	459.8	-	-	-	
	S11	1,946.2	-	-	-	
	S12	277.2	-			
	S13	331.6	220 - 13	53	66	
			220 - 27	10		
			220 - 318	3		
	S14	1,709.6	-	-	-	
	S15	168.6	-	-	-	

) 가 cad

3) 공동개발계획

■ 계획기준

()	· 2 () · 2	
()	· (· , ,)가 2 · 가 2 ·	
	· 2 (/ 가)	

■ 공동개발 결정(변경)조서

	가	(㎡)			
	S4	220-8 220-200	28 10	38	· ()
	S4	220-187 220-237	6 63	69	· ()
	S4	220-188 220-189	73 80	153	· ()
	S6	217-14 217-15	73 73	146	· ()
	S6	218-18 219-9	96 69	165	· ()
	S6	217-10 218-56 219-12	146 20 69	235	· 217-10, 218-56 () · 219-12 ()
	S6	220-201 220-202	76 197	273	· ()
	S7	237-47 237-135	36 76	112	· ()
	S11	220-219 220-280	42.3 7	49.3	· () · 220-219()
	S11	220-324 220-295	79 32.1	111.1	· () · 220-295()
	S13	220-297 220-300	83 73.2	156.2	· () · 220-295()
		220-299 168-3	83 10.8	93.8	· () · 168-3()

	가			(㎡)		
S14			220 - 302	73	162	· 220 - 302, 220 - 303 () · 220 - 319 ()
			220 - 303	83		
			220 - 319	6		
S14			220 - 217	48.9	55.9	· () · 220 - 217()
			220 - 281	7		
S14			220 - 312	63	92.2	· () · 220 - 313()
			220 - 313	29.2		
S15			220 - 316	43	56.8	· () · 220 - 320()
			220 - 320	13.8		
S15			220 - 315	63	114	· () · 220 - 313()
			220 - 20	51		

나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없음)

다.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없음)

□ 2020년 제11차('2020.08.19.)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: '수정가결'

7	가	0 46) , 가	0 46	
		0 가 , , 가	0 가 , 가	
		0 ,	0 ,	

IV. 관련도면 : 붙임 참조

1. 정비구역 결정도
2. 용도지역 결정도(기정/변경)
3. 도시계획시설 결정도(기정/변경)
4. 정비계획 결정도

5. 지구단위계획 결정도

※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(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V.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도서 : 생략

VI. 열람장소 :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(☎02-2133-9519), 동대문구 주거정비과(☎02-2127-4590)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.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<http://luris.mlt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illegible]

Seonam-dong area map showing the proposed development site. The map includes a legend with various land use categories and their corresponding colors. The development site is highlighted in yellow. The map also shows surrounding roads, rivers, and other land use areas. A scale bar and north arrow are provided at the bottom right.

Seonam-dong area map

Legend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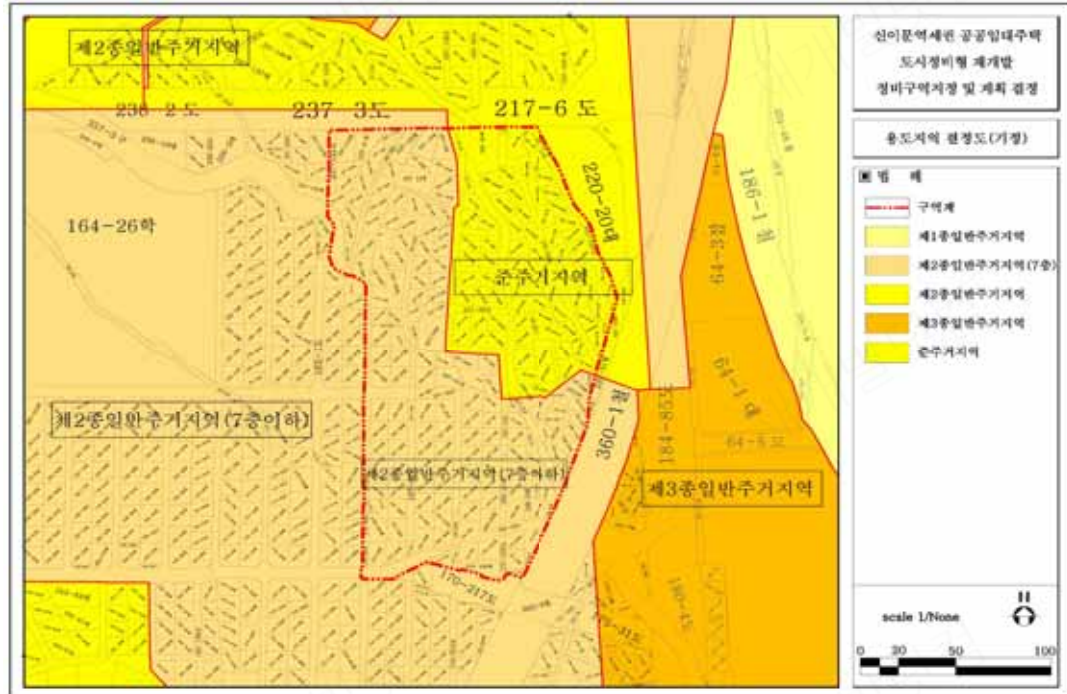
- 구역제 (District Boundary)
- 도로 (Road)
- 사회복지시설 등 (Social Welfare Facility, etc.)
- 공공공지 (Public Notice)
- 획지 (Acquired Land)
- 도시계획시설(소로, 중로) (Urban Planning Facility (Small Road, Medium Road))
- 사회복지시설 (Social Welfare Facility)
- 정소나사설 (Public Notice)
- 도시권 (Urban Area)
- 공공공지 (Public Notice)
- 건축완결선 (3m) (Construction Completion Line (3m))
- 편의공지 (보도형) (Public Notice (Sidewalk Type))
- 공공보행통로 (4m) (Public Walking Path (4m))

Scale: 1/Non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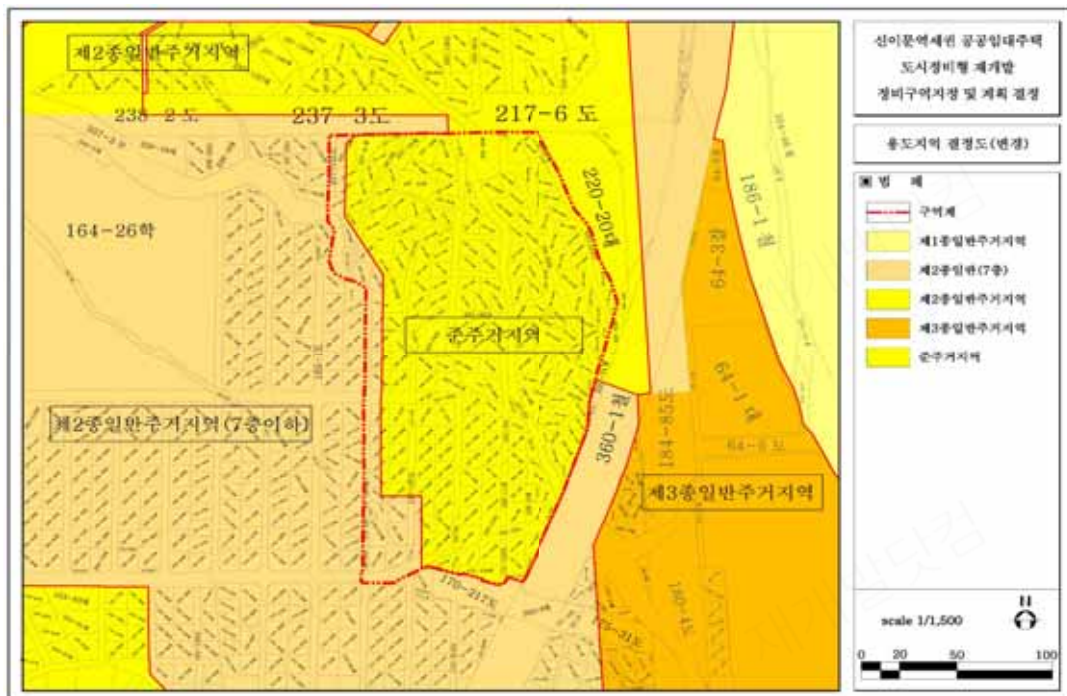
North Arrow: N

Scale Bar: 0, 20, 50, 1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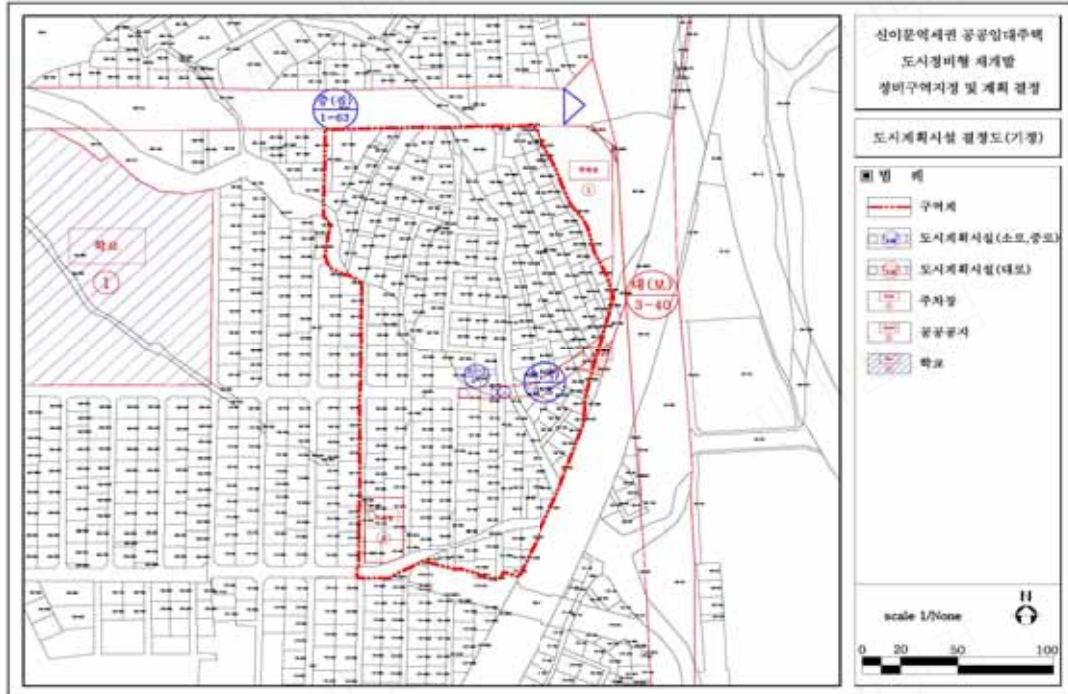
□용도지역 결정도(기정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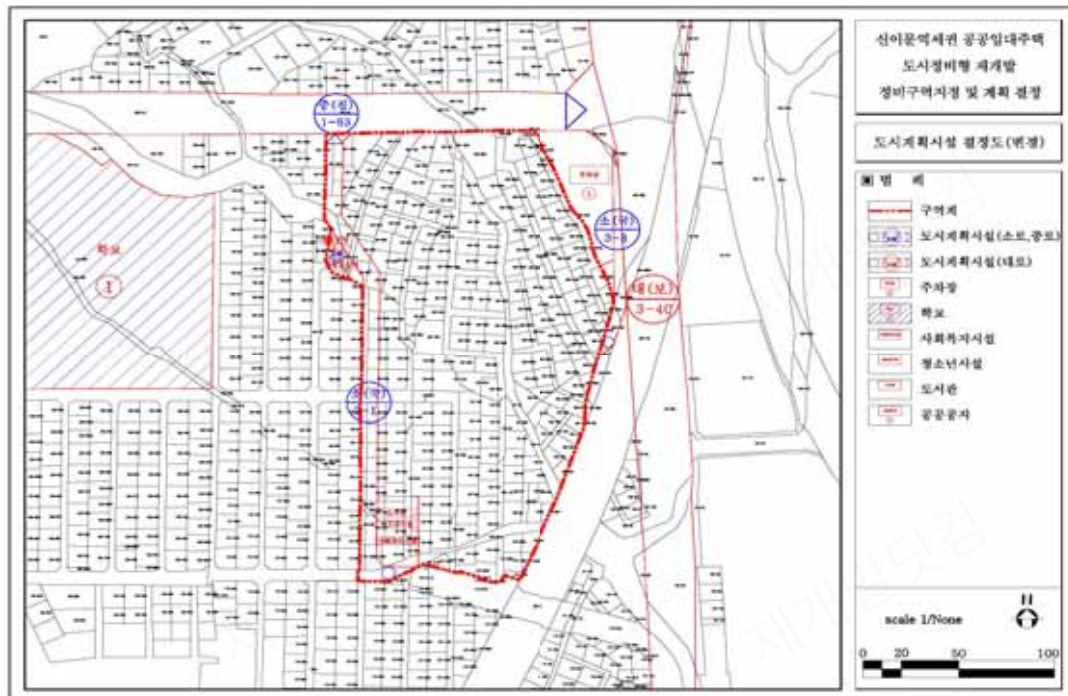
□용도지역 결정도(변경)



□도시계획시설 결정도(기정)



□도시계획시설 결정도(변경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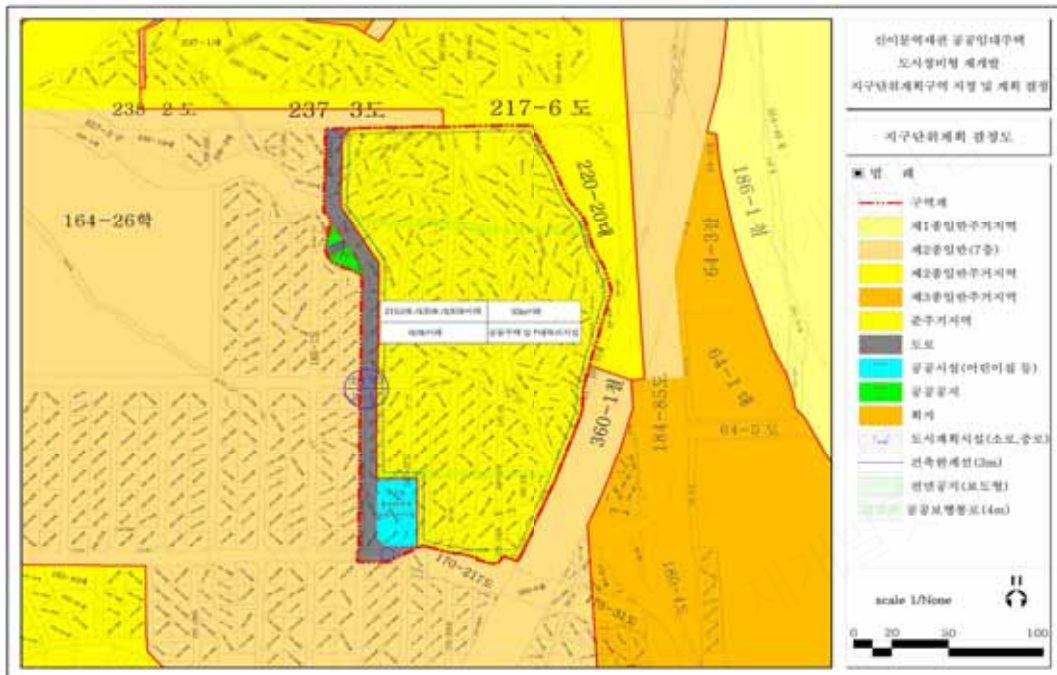


[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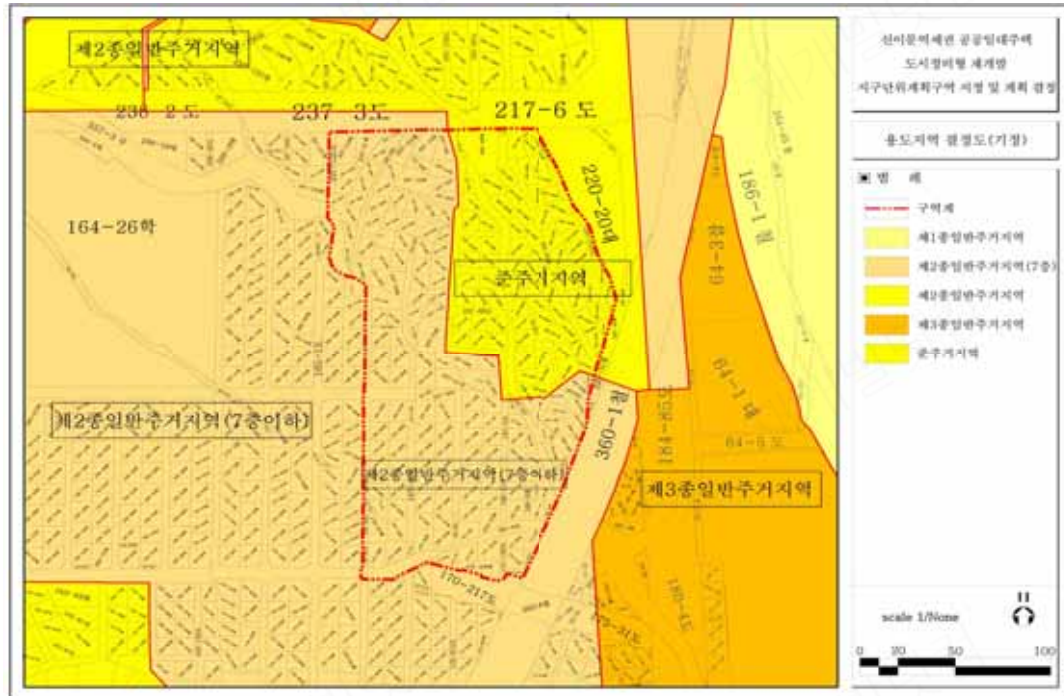
□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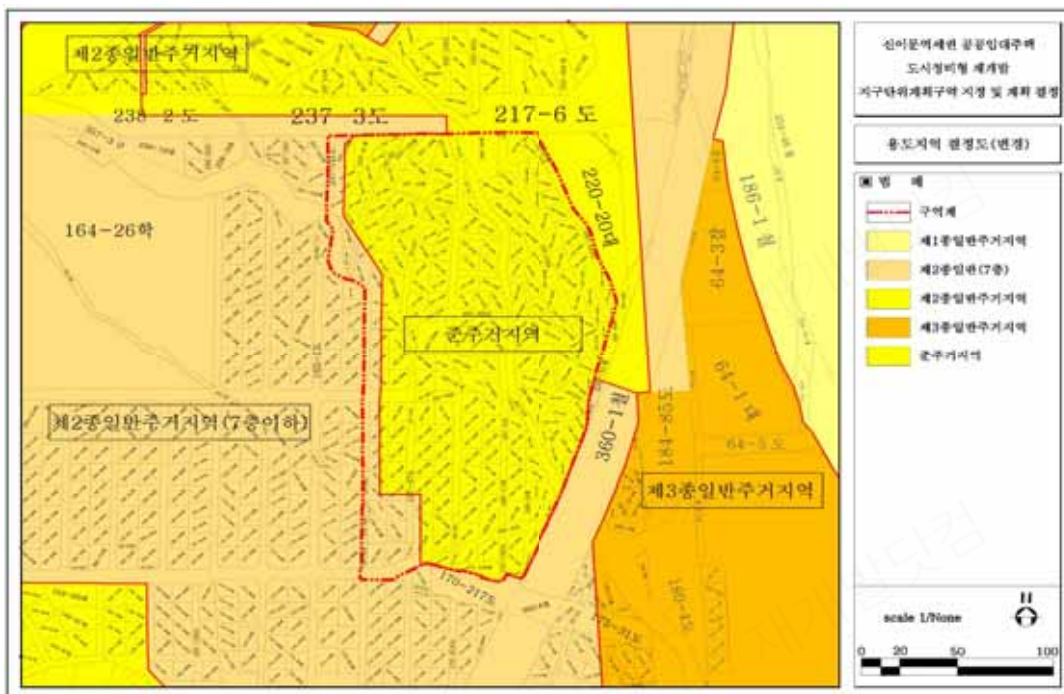
□지구단위계획 결정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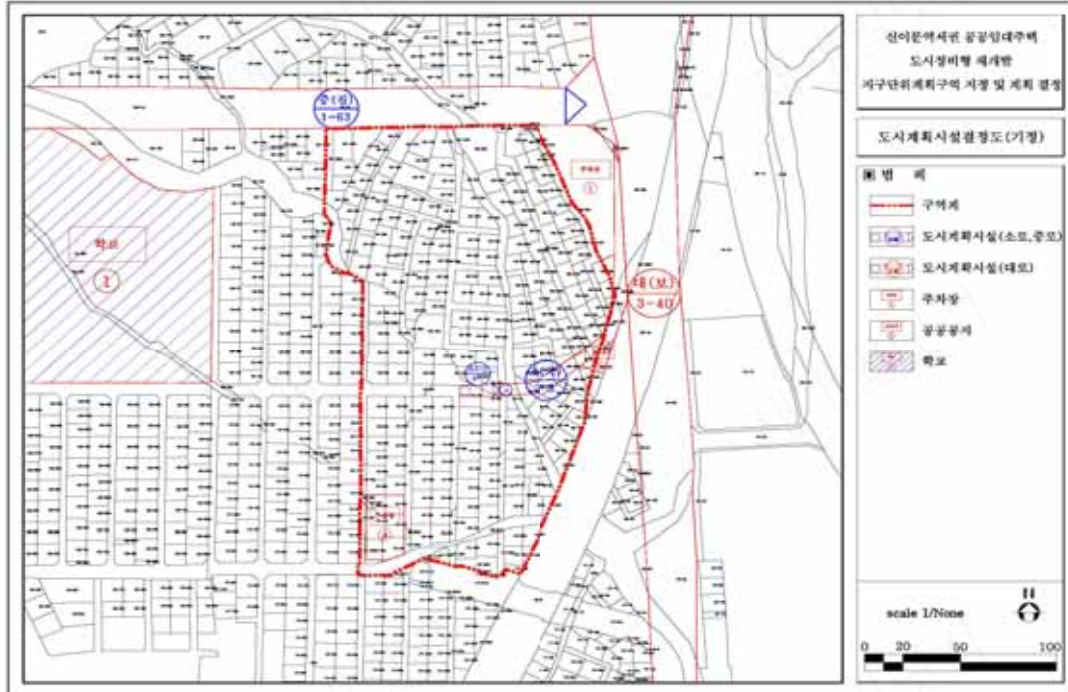
□용도지역 결정도(기정)



□용도지역 결정도(변경)



□도시계획시설 결정도(기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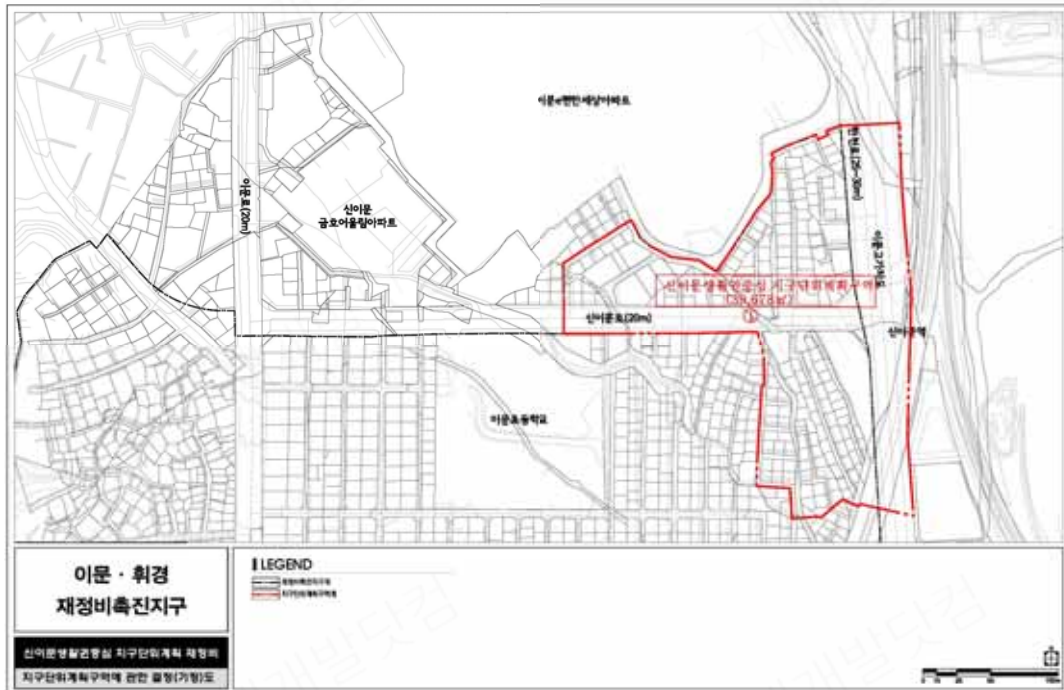


□도시계획시설 결정도(변경)



[신이문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]

□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(기정)



□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(변경)

